

보도의 문제점과 언론중재

안광식
이대교수 · 중재위원

어떤 학자는 언론의 피력을 원자탄의 위력과 필적할만한 것이라고 비유한적이 있다. 왜냐하면 원자탄은 수백만의 인명을 일시에 살상할 수 있는 가공스러운 힘이 있는 반면에, 원자탄을 몇 나라들이 보유함으로써 세력균형이 유지되어 전쟁을 억제하고 있는 등 그 위력에 있어 양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언론의 순기능과 역기능적인 양면성을 고려 할 때 그것이 사회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원자탄의 힘 만큼이나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이 올바르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면 국민과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수가 있지만, 그 기능이 악용되면 국민을 오도하고 사회와 국가를 파멸의 경지에 빠뜨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 그와 같이 막중한 세력을 갖고 있는 언론이 때로는 불행하게도 그 힘을 잘못 사용하여 인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지면과 프로그램의 제작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언론이 의도적이건 비의도적건간에 오보나 허위보도를 하게 되어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그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일인 줄로 생각된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며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에게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헌법은 명시해 놓고 있다.

그와 같은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를 위해서 정정보도청구권과 그에 따른 분쟁을 중재하고 언론침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언론중재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언론이 무엇보다도 제 1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진실을 보도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언론이 어떤 사건과 그 과정에 관한 「사실」을 잘 보도할지 모르지만 그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의 여부를 때로는 밝혀내지 못한 채 보도하고 있다는 점이 현대 저널리즘의 기본적 문제로 지적된다. 뉴스원에 의해서 제공되고, 또 기사들에 의해서 보도되는 「사실」이 반드시 「진실」이 아닌 경우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 언론의 최고의 가치기준이 되어야 하는 진실추구에 있어 차질이 생기게 마련이며, 이것이 바로 언론 보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또한 일반적으로 언론이 제공하는 보도가 사건의 「실제적 사실」과 얼마나 정확하게 동일할 수 있는가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 언론에서 제공하는 보도는 소위 「미디어의 사실」로서 제공되는 것인데, 그 언론에서 「보도한 사실」이 취재원에서 제공한 사실과 때로는 차이가 있으며, 「취재원의 사실」 또한 사건의 「실질적 사실」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현실이 취재원을 거쳐 미디어에서 제공될 때는 두 번이나 왜곡 또는 가미된 보도일 가능성도 있다.

신문과 방송의 생명은 물론 무엇보다도 정확성을 기해야 하는 것이지만 어떤 사실에 대한 진실과 허위의 여부를 가려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사실 가운데서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언론의 제 1의 생명일진대 언론이 그 어려운 사명을 포기할 수는 없으며, 만약에 진실을 찾지 못하고 허위보도를 했을 경우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상황의 여하에 불구하고 오보 또는 허위보도가 빈번해지면 허위적 사실에 의한 분위기가 이 사회에 만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문이나 방송은 오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반드시 질 줄 알아야 겠다는 것이다.

지난 몇 해 동안에 두드러진 오보 사건으로는 한국산 호랑이, 총건 바둑이, 예방접종 주사에 의한 쌍둥이 사망, 장애자 회비 착복, 대구발 로이터통신 기사, 경희대 경찰 투입요청, 사제간의 디스코춤에 관한 기사 등이며 그밖에 알려지지 않은 오보가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된다.

근년에 신문이 오보에 대하여 스스로 비판을 기도하고, 정정보도를 내거나, 또는 오보에 의해 진실 취재 보도를 하는 등 언론이 스스로 개선의 방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지적된다.

보도의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것은 미디어에서의 선정주의라고 할 수 있다. 선정주의는 수용자의 감정에 호소하고 그들을 자극시키면서 오락성을 추구하는 기능이 강하며, 선정주의의 추구는 긴장완화 또는 불만을 해소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미디어에서의 선정주의는 또한 수용자들에게 값싼 낭만성을 조성해 주고도 있으며,

흥미본위의 소재를 제공함으로써 호기심과 화제거리를 조성해 주고 있다. 그래서 미디어의 센세이셔널리즘은 올바른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고 바람직한 사회규범을 설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 흥미와 오락, 순간적 도피와 시간낭비, 정치에 대한 외면, 사회적 문제의식의 결여, 도덕과 윤리의 퇴폐, 본능적 자극, 공공성보다 상업성의 발취 등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적 기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선정주의는 대중의 사회심리를 이용하여 상업성을 발휘하는데 주력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선정주의의 궁극적 목표는 영리추구 이외에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신문이나 방송은 큰 사건이 생기면 의례히 그 내용을 필요 이상으로 확대, 과장하여 보도·편집하는 경향이 습성화 된 것 같이 보인다. 그와 같은 경우들이 특히 사회범죄 사건들과 관련된 살인, 강도, 치정, 폭행사표 등에 관한 보도들이다.

언론의 문제점으로 또한 지적되어야 할 사항은 신문과 방송이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몇 가지 예만 들어보기로 한다.

언젠가 이런 보도기사가 신문에 게재된 적이 있었다. 강도가 침입하여 세 들어 살고있는 젊은 여성을 욕보였다는 내용이었다. 익명을 썼지만 그 집의 주소를 정확히 밝힌 기사였다. 신문은 그 여성을 또 한번 욕보인 셈이 된다.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판결이 나기도 전에 기사와 제목을 통하여 유죄 판결과도 같은 「언론재판」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언론이 성급하게 흥미위주로 사건을 취급하여 보도하는 습성때문에 생기는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사생활과 관련된 보도에 있어 표현의 과장과 저속성, 불필요한 사진의 게재, 사람과 기관의 익명표시에 있어 암시적 영문(알파벳)의 사용,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장본인의 주소사용 등이 모든 것이 무의식 중에 보도된다 하더라도 뉴스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명예와 사생활의 침해를 할 뿐 아니라 때로는 당사자가 이 사회에서 발붙일 곳이 없이 매장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은 언론보도의 여러 문제점들과 관련하여 분해에 대한 구제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 헌법에서 규정된 피해배상청구권이다. 즉 헌법에서는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상의 요청에 따라 생긴 것이 정정보도청구권이다.

이 정정보도청구권 제도는 언론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와 언론사간에 정정보도의 내용등에 관해 협의한 후 법이 정한 일정기간 내에 무료로 보도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언론이 특정인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피해자에게 대등한 방어수단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헌법상의 요청이기 때문에, 보도된 매체를 통해서 피해내용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방어주장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이 제도는 진실추구를 위해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된다는 점으로, 수용자는 언론이 일방적으로 수집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정보대상의 반대주장까지 수용할 수 있어야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정보도의 청주는 통상적으로 보도의 내용이 진실에 반한다는 주장과 함께 보도내용과 상반 또는 모순되는 내용을 정정보도문으로 발표해 줄 것을 청구하는 소위 대립적 반론권이라고 하겠으나, 보도 내용이 불충분하여 수용자들이 받은 미흡 또는 그릇된 인상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충적 내지 추가적 내용의 정정보도청구」도 정당한 이익으로 인정을 받아야 할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요한 기능은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자와 언론사간의 분쟁을 중재함으로써 당사자들이 법정투쟁을 거치지 않고 그들간의 이해관계를 균형있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에 의하면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침해의 내용을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발행인 또는 방송국의 장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은 중재역할을 함에 있어 피해자나 언론사의 어떤 한쪽에도 편향되지 않는다. 언론중재제도의 취지는 중재의 중립성을 유지함으로써 공평·공정·정확한 보도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지난 4년동안(81년 3월 31일부터 85년 4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언론중재의 신청을 받고 처리한 결과를 보면, 언론중재 신청건수는 그 동안 총 240건으로 그중 불성립이 91건(38%), 취하 70건(29%), 기각 9건(4%), 각하 5건(2%)이었으나 합의를 본 것이 65건으로 27%를 차지했다. 합의보다는 불성립의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가 접수한 총 신청건수 중 언론침해유형으로는 명예훼손과 사생활의 침해가 173건 (72%)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다음이 신용권 58건(24%), 그리고 저작권 9건(4%)도 포함되어 있었다.

언론중재가 성립되지 않은 사례는 모두 91 건이었었는데 피신청인, 즉 언론사가 출석을 하지 않아 성립이 되지 않은 것이 37 건(41%)인 반면에 신청인의 불출석이 6 건(6%)이었다. 신청인의 불출석은 심경의 변화로 신청인 스스로가 중재를 원치 않거나 신청을 한 뒤에 철회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불성립의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합의 결렬로서 48 건(53%)이었다.

그리고 불성립의 91 건 중 법원제소는 24 건으로 제소비율은 26.3%에 해당된다. 법원제소 결과는 24 건 중 승소가 6 건, 기각 9 건, 화해 2 건, 취하 5 건, 계류 2 건 등으로 귀결되었다.

언론중재를 신청한 뒤에 신청인이 스스로 중재를 취하한 사례는 총 신청건수 240 건중 70 건인데, 중재 이전에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했기 때문에 취하한 것이 5 건(7%), 언론사에서 정정 보도가 아닌 PR 기사를 내주겠다는 제의에 의해서 취하한 것이 23 건(33%)에 이르고, 조건없이 취하한 것이 42 건(60%)으로 가장 많았다. 「조건없는 취하」의 경우는 언론사와 신청인 사이에 「언론중재의 장 밖」에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이 대부분의 경우였다. 정정보도라기 보다는 그 밖의 형태의 보도를 통해서, 또한 상호간의 이해와 화해를 통한 장외에서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조건없이 취하를 한 경우들이었다.

중재신청의 대상이 된 언론매체는 총 240 건 중 일간신문이 141 건(5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방송 30 건(13%), 주간지 23 건(9%), 주간신문 18 건(7%), 통신 14 건(6%), 월간지 13 건 (5%)의 순이었다.

언론중재의 주요 대상은 수용자들과 접촉이 가장 빈번하고 많은 일간신문과 방송으로 나타났다.

언론중를 신청한 주체를 유형 별로 살펴보면, 개인이 140 건(62%)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음이 일반단체 31 건(13%), 회사 27 건(11%), 종교단체 17 건(7%), 공공기관 11 건(4%), 학교 4 건(2%), 종친회 1 건(1%)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재 신청은 지방 35 건(15%) 보다 서울의 경우가 205 건(85%)으로 단연 많았다.

지난 4 년동안 언론중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중재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리결과에 있어 합의보다는 불성립과 취하가 많으며, 불성립의 이유로는 합의가 가능한 것인데도 언론사의 불출석 또는 불성실, 그리고 신청인의 지나친 요구로 서로가 양보하지 않아 합의가 결렬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언론사가 스스로 언론침해를 인정하면서도 정정보도 대신 편법을 써서 다른 형식으로 피해를 보상해 준다면 또는 피해자로 하여금 중재신청을 취하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일뿐더러 정정보도청구권과 언론중재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게 만드는 처사라고 지적된다.

먼저 국민 개개인은 법이 보장하는 자신의 권익을 충분히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언론침해를 받았을 때 정정보도 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만 민주국민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으면서 한편 언론으로부터 「진실보도」를 기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국민 개개인은 정정보도청구권을 남용해서는 안되며 만약에 그것을 역이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것은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언론사측에서는 또한 피해자의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와 언론중재를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제도는 긴 안목으로 볼 때 결국은 언론의 신뢰도와 공신력을 향상시키고 그 가치와 수준을 또한 높이자는데 목적이 있으며 언론사와 수용자 모두에게 이익과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 근본 취지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 개개인의 권익이 언론으로 인하여 침해 당해서도 안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실은 언론의 자유가 또한 중재로 인하여 침해 당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명제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봉사해야 하는 기구가 언론중재위원회라는 점을 다시금 밝혀두는 바이다.

- 서울대학교 영문과, 미국 콜롬비아대 신문대학원

- 코리아 헤럴드 외신부장 역임

- 저술 : 「신문과 정부와의 갈등」

-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언론중재위원회 위원